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12
----------	------

제출년월일 : 2022. 8. 2.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상위법 제정에 따른 조례 정비
- 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 및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정비 등

주요내용

- 상위법 변경에 따른 정비
 - 제명 변경(도시림법 → 도시숲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조, 제5조, 제18조의2, 제19조)
 - 도시림 → 도시숲(안 제2조, 제5조, 제6조)
 - 상위법인 도시숲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3조, 제4조)
 - 원인자 비용부담 및 훼손자의 배상책임 등 및 관련 조례 정비(안 제19조, 제20조 및 별표2)
- 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 및 조항 정비 등
 -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화(안 제5조)
 - 위원회를 도시공원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변경
 - 녹화계약 건 중 기타 법령에 따른 공모사업은 제외
 - 조례 목적에 맞지 않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호수 내용 삭제(안 제47조부터 제49조)

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4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2. 6. 10. ~ 2022. 6. 30.(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5
 - 방침결정문 : 붙임6

< 붙임 1 >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22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림”이란”을 ““도시숲”이란”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산림자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을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도시숲”으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산림자원법 제20조”를 “도시숲법 제6조”로,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항”을 “사항.”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녹화계약 건 중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모사업은 제외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위원회는 도시숲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제26조의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법 제21조제1항” 을 “도시
숲법 제12조제2항”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가로수의 가지
치기와 이식은” 을 “행위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산시 재
무회계 규칙」 제80조” 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
63조” 로 한다.

① 도시숲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 등
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훼손자의 배상책임 등)” 을 “(훼손자 과태료 부과)” 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배상금을 청
구” 를 “과태료를 부과” 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80조” 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배상” 을 “과태
료” 로 한다.

① 도시숲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2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다.

제47조 앞에 “제7장 보호수의 지정 관리” 를 삭제한다.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녹지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녹지과장 서 병 구
	담당·팀장 직위·성명	도시숲조성팀장 서 경 만
	담 당 자 성명·전화	공 성 경 (행정 2346)

[별표 2]

원인자 비용부담·훼손자 과태료 부과 등의 산정기준(제19조, 제20조 관련)

원인자 비용부담 등	<p>1. 이식을 원하는 경우</p> <p>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예치금 = 도급공사비</p> <p>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비용부담 = 도급공사비 + 이식비 ※이식비: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p> <p>2. 제거하는 경우</p> <p>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비용부담 = 도급공사비</p> <p>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비용부담 = 도급공사비 + 제거비 ※ 제거비: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p>
훼손자 과태료 부과	<p>1.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정수 가치가 없는 경우 : 배상금 = 도급공사비 ※ 원인자가 원상복구 하는 경우: 예치금 = 도급공사비</p> <p>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배상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재료비 및 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수관의 1/3 이상 ※ 작업비: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p> <p>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배상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p> <p>4. 그 밖의 훼손의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도급공사비</p>
<p>※ 비 고</p> <p>도 급 공 사 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원가계산(수목 등 재료비포함)적용하여 설계된 공사비</p> <p>수 목 비: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p> <p>예치금납부방법: 금액이 500만원 이상 일때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단, 훼손자가 교통사고로 훼손된 가로수를 원상복구한 경우 제20조제2항의 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p> <p>예치금예치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하자책임담보 기간 동안 예치</p> <p>예치금환불 등: 예치기간이 경과한 후 이식목에 대한 조정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관리청”이란 관련법령 등에 따라 <u>도시림</u> 등(가로수, 보호수, 녹지 등)을 관리하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기관을 말한다.</p> <p>2. “<u>도시림</u>”이란 도시에서 국민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p> <p>3. ~ 9. (생략)</p>	<p><u>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12조, 제13조, 제22조 -----</p> <p>-----.</p> <p>제2조(정의) -----</p> <p>-----.</p> <p>1. -----</p> <p>---- <u>도시숲</u> -----</p> <p>-----</p> <p>-----.</p> <p>2. “<u>도시숲</u>”이란 -----</p> <p>-----</p> <p>-----</p> <p>-----.</p> <p>3. ~ 9. (현행과 같음)</p>

제2장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제3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도시림 등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녹지현황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녹지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산림자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림자원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5. 제35조 및 제45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녹화계약에 관한 사항 <단서 신설>

제2장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삭제>

<삭제>

제5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1. 도시숲법 제6조----- 도시숲 -----
2. ~ 4. (현행과 같음)
5. -----사항. 다만, 녹화계약 건 중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모사업은 제외

6.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보호수림
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생략)

8.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
·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
항

② 위원회는 산림자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
시림 등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
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
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 균
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
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림 등 업무담당과장
5. 업무관련 부서의 장

<삭제>

7. (현행과 같음)

8. ----- 도시숲 -----

<삭제>

<삭제>

<삭제>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삭 제>

⑥ 간사는 도시림 등 업무담당팀장이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한다.

<삭 제>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삭 제>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제3자 등에게 유출한 때
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킬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삭 제>

1. 위원이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
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
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
치는 안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
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⑫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가
로수의 수종은 도시립 등의 조성·관
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삭 제>

<삭 제>

<삭 제>

⑬ 위원회는 도시숲법 제13조제4항
에 따라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제26조의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6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 도시숲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산림자원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 가능한 행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 5. (생략)

②·③ (생략)

제19조(원인자 비용부담 등)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21조에 따라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관리청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하자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에게 원상 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금으로 2년간 예치하게 할 수 있고, 원인자는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치금의 반환을 신청하며, 시장은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80조에 따라 이를 반

제18조의2(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

도시숲법 제12조제2항 -----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원인자 비용부담 등) ① 도시숲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 행위는 -----

③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

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20조(훼손자의 배상책임 등) ① 가
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관리청은 배상금
을 산정하여 훼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관
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
에는 훼손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
는다. 이 경우 시장은 가로수의 하자
등을 고려하여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금으로 2년 간 예치
하도록 할 수 있고, 훼손자는 정상적
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 별지 제7
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치금의 반환을
신청하며, 시장은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80조에 따라 이를 반환하
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배상 책임
이 있는 자가 배상금을 미납한 경우
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배상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 7 장 보호수의 지정 관리

제47조(보호수, 보호수림의 지정 및 해
제) ① 관리청은 나무모양이 아름다
운 나무, 희귀나무, 대형목, 희귀림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훼손자 과태료 부과) ① 도시
숲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2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과태료를 부과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
-----.

<삭 제>

④ ----- 과태료 -----
-----.

<삭 제>

<삭 제>

및 고령림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 수림을 보호수, 보호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수, 보호수림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보호수가 보호수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8조(보호수, 보호수림의 유지관리)

<삭 제>

① 보호수, 보호수림의 관리자는 보호수, 보호수림이 귀중한 자연재산이고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수, 보호수림의 보호구역내에서는 수목 생육에 해로운 절토, 성토, 상하수도시설, 도로시설,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보호수, 보호수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9조(보호수, 보호수림의 지원)

<삭 제>

① 관리청은 보호수, 보호수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보호수, 보호수림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별표 2]

원인자 비용부담·훼손자 배상금 등의 산정기준(제19조, 제20조 관련)

원인자 비용부담 등	<p>1. 이식을 원하는 경우</p> <p>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예치금 = 도급공사비</p> <p>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비용부담 = 도급공사비 + 이식비</p> <p>※ 이식비 :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p> <p>2. 제거하는 경우</p> <p>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비용부담 = 도급공사비</p> <p>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비용부담 = 도급공사비 + 제거비</p> <p>※ 제거비 :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p>
훼손자 배상금 등	<p>1.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p> <p>: 배상금 = 도급공사비</p> <p>※ 원인자가 원상복구 하는 경우 : 예치금 = 도급공사비</p> <p>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p> <p>: 배상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재료비 및 작업비</p> <p>※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 이상</p> <p>※ 작업비 :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p> <p>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배상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p>
<p>※ 비고</p> <p>도 급 공 사 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원가계산(수목 등 재료비포함) 적용하여 설계된 공사비</p> <p>수 목 비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p> <p>예치금납부방법 : 금액이 500만원 이상 인데 보증보험증원으로 예치 가능. 단, 훼손자가 교통사고로 훼손된 가로수를 원상복구한 경우 제 20조 제2항의 예치금을 보증보험증원으로 예치 가능</p> <p>예치금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하자책임담보 기간 동안 예치</p> <p>예치금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한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어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p>	

[별표 2]

원인자 비용부담·훼손자 과태료 부과 등의 산정기준(제19조, 제20조 관련)

원인자 비용부담 등	<p>1. 이식을 원하는 경우</p> <p>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예치금 = 도급공사비</p> <p>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비용부담 = 도급공사비 + 이식비</p> <p>※ 이식비: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p> <p>2. 제거하는 경우</p> <p>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비용부담 = 도급공사비</p> <p>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비용부담 = 도급공사비 + 제거비</p> <p>※ 제거비: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p>
훼손자 과태료 부과	<p>1.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p> <p>: 배상금 = 도급공사비</p> <p>※ 원인자가 원상복구 하는 경우 : 예치금 = 도급공사비</p> <p>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p> <p>: 배상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재료비 및 작업비</p> <p>※ 강도의 가지치기: 수관의 1/3 이상</p> <p>※ 작업비: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p> <p>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배상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p> <p>4. 그 밖의 훼손의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도급공사비</p>
<p>※ 비고</p> <p>도 급 공 사 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원가계산(수목 등 재료비포함) 적용하여 설계된 공사비</p> <p>수 목 비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p> <p>예치금납부방법 : 금액이 500만원 이상 인데 보증보험증원으로 예치 가능. 단, 훼손자가 교통사고로 훼손된 가로수를 원상복구한 경우 제 20조 제2항의 예치금을 보증보험증원으로 예치 가능</p> <p>예치금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하자책임담보 기간 동안 예치</p> <p>예치금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한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어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p>	